

공정거래 정책



## 1. 목적

본 정책은 (주)하림이 경영활동 전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,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함으로써 고객, 협력사,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정의

- ① 공정거래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, 불공정 하도급 거래, 부당한 공동행위(담합), 부당지원행위 등 불공정하거나 부정경쟁적인 상거래 관행을 지양하고,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제반 행위를 말한다.
- ② 본 공정거래 정책은 회사의 공정거래 관련 위험을 식별·평가·관리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목표, 기준, 절차, 역할 및 운영체계를 포함하며, CP(Compliance Program)의 핵심 지침이다.

## 3. 적용범위

본 정책은 하림 본사 및 전국 사업장, 자회사, 관계사에 소속된 전 임직원에게 적용되며, 공급업체, 수탁가공업체, 유통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도 준수를 권장한다.

## 제1장 공정거래에 대한 방침

### 4. 공정경쟁 및 법규준수의 원칙

- ① 하림은 자유시장경제와 공정한 경쟁질서를 존중하며, 공정거래법, 하도급법, 표시광고법, 대리점법 등 관계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한다.
- ② 하림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으며, 담합 및 경쟁제한 행위, 부당한 고객/협력사 차별, 부당한 공동행위 및 기술탈취를 일절 금지한다.

### 5. 거래 공정성 및 상생협력

- ① 모든 거래는 대등한 지위에서 자율적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, 서면 계약 원칙, 적정 납기, 대금 지급기한 준수, 기술자료 보호를 준수한다.
- ② 하림은 협력업체에 대한 일방적 계약 변경, 부당 반품, 납품 강제, 경제적 이익 강요, 보복조치를 금지하며,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 제공 및 역량개발을 적극 지원한다.

## 제2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계

### 6.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 및 권한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가 선임하며, 최고경영자에게 독립적인 보고 권한을 가진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.
  - (1) CP 운영 계획 및 정책 수립
  - (2) 공정거래 관련 이슈 점검 및 모니터링

- (3)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시행
- (4)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제재 상정
- (5) 공정거래위반 리스크 분석 및 보고

## 7. 전담부서 운영

- ① CP 편람 관리 및 개정
- ② 사내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
- ③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운영
- ④ 정책 및 편람에 대한 사내 홍보 및 개선

## 제3장 실행 기준 및 이행

### 8. 정기 교육 및 실천지침 배포

- ① 임직원은 입사 시 공정거래 기본 교육을 이수하며, 리스크 보유 부서(구매, 영업, 마케팅 등)는 연 1회 이상 맞춤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-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은 2년 주기로 개정하며, 인트라넷 등을 통해 전 임직원이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.

### 9. 리스크 식별 및 예방

- ① 주요 리스크 요소(예: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, 계약서 미교부, 특혜성 내부 거래, 부당한 공동행위 등)는 연 1회 이상 점검하며, 자체 체크리스트 또는 부서 인터뷰를 통해 사전 식별한다.
- ② CP 모니터링 결과는 자율준수관리자가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반기 1회 이상 보고한다.

### 10.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보상

- ① 위반 행위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위반행위 유형 및 경중에 따라 차등 제재한다.
- ② 내부 신고자 및 CP 모범 이행자에게는 포상금 또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
## 제4장 정보 공개 및 지속 개선

### 11. 내·외부 공개

하림은 공정거래 정책 및 CP 운영 현황, 교육자료, 위반사례 등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, 홈페이지, 사내공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.

### 12. 지속적인 개선

- ① 공정거래 정책은 연 1회 이상 검토하여야 하며, 법령 개정, 산업 리스크 변화, 내부 감사결과 등에 따라 보완한다.
- ② CP 운영성과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등급평가를 통해 검증한다.

## 부 칙

- 본 정책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정책의 변경 또는 폐기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제안과 대표이사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
- 본 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‘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규정’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.

주식회사 하림 대표이사 사장 정호석

정 호 석